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540호)

2023.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문 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3. 7. 28.
3. 회부연월일 : 2023.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그 보호자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4호).

Ⅲ. 검토의견

1. 소방안전교육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추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략)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④ (생략)	4. ----- ----- -- <u>장애인 및 그 보호자</u> ③·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¹⁾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58만여 명에서, 2022년 265만여 명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²⁾

한편 2022년도 화재사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 5,143만여 명 중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2,668명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전체 장애인 인구 수 265만여 명 중 장애인의 사상자가 296명으로, 장애인의 화재 사상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23배 크게 나타남.

< 2022년 화재사상자 현황 >

구 분	인구수	화재현황			비고
		계	사망	부상	
계	51,439,038	2,668	341	2,347	
장애인	2,652,860	296	122	174	
비장애인(일반인)	48,786,178	2,372	219	2,173	

(출처 : 2022.12.31.기준 / 2022년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

이처럼, 장애인의 증가 추세와 높은 화재 피해율을 볼 때 가족 등 장애인의 보호자가 소방안전에 관한 지식과 요령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2) ('18년) 2,585,876명→('19년) 2,618,918명→('20년) 2,633,026명→('21년) 2,644,700명→('22년) 2,652,860명

크지만,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만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과 시설 관계인에 대해서만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부모 등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장애인의 72.6%로 나타나는바³⁾,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계인 외에 장애인과 동거하거나 생활을 지원하는 보호자에 대한 소방교육 제공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를 포함할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소방안전 확보 요령과 재난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방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고붙임자료 “장애인 보호자 관련 현황”을 참조할 것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2022년말 기준, 단위: 개소)

합계(개소)	거주시설	직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3,866	1,539	773	1,519	17	18

(자료: 소방청)

참고1

장애인 관련 현황

(자료: 소방청)

□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합계(개소)		거주시설	직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21년	3,813	1,539	720	1,519	17	18
'22년	3,866	1,539	773	1,519	17	18

□ 장애인 거주시설별 현황

구분(개소/명)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중증장애	장애영양아	단기*	공동**
'21년	시설수	1,539	28	16	7	317	251	9	157	754
	이용인원	29,086	1,121	579	205	11,349	10,866	361	1,733	2,872
'22년	시설수	1,535	28	15	7	310	249	9	164	753
	이용인원	28,565	1,055	569	196	11,205	10,568	357	1,792	2,823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현황

계(개소)		장애인복지관	주요간호	체육시설	생활아동지원센터	수통역어센터	수시연설	점도서관	점자및출판	비고
'21년	1,519	258	797	28	164	251	1	19	1	
'22년	1,568	261	818	31	165	268	1	22	2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구분(개소/명)		계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비고
'20년	시설수	720	67	619	34	
	현 원	19,734	2,875	16,147	712	
'21년	시설수	773	87	647	39	
	현 원	20,504	3,166	16,554	784	

< 장애인 보호자 관련 현황 >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의 유형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소계	100													
배우자	38.7	52.3	41.9	37	47.7	43.8	7.7	1.7	17.3	60.6	58.2	76.4	83.9	75
부모	20.8	4.8	13.5	7.9	3.4	34.2	66.4	76.3	45.1	6.4	13.8	4.4	15.3	12.4
자녀	13.3	17	11.9	16.7	26.3	6.8	1.5	-	4	10.7	16.3	3.2	0.8	-
인척	4.7	2.6	2.4	3.9	2.5	5.3	9	5.7	20.6	2.9	8.5	1.2	-	5.4
친구/이웃	0.6	0.6	0.3	0.5	1.7	-	0.3	-	-	-	-	-	-	-
요양보호사	9.5	11.5	14.1	14.1	11.8	6.4	0.7		2.9	11	3.2	4.7		7.2
활동보조인	8.5	7.5	10.7	16.5	3.9	3.5	10.2	13.5	5.5	3.5	-	8.5	-	-
기타	3.9	3.7	5.2	3.4	2.7	-	4.2	2.8	4.6	4.9	-	1.6	-	-

□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소 계	100													
예	72.6	70.6	68.5	62.7	71.4	83.7	80.9	81.1	76.6	76.1	93.7	83	94.3	87.4
아니오	27.4	29.4	31.5	37.3	28.6	16.3	19.1	18.9	23.4	23.9	6.3	17	5.7	12.6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2

소방안전교육훈련 현황

(자료: 소방청)

< 최근 5년간 소방안전교육 현황 >

구분	계	유아	초등	중고등	성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계	31,760,961	4,268,840	7,745,132	5,472,178	11,323,630	2,271,038	423,870	256,273
2018년	9,487,100	1,335,989	2,123,431	1,291,964	3,969,737	601,356	104,373	60,250
2019년	8,214,757	917,475	1,919,127	1,347,873	3,620,288	297,547	68,816	43,631
2020년	2,270,338	210,072	632,574	544,188	574,451	263,615	34,964	10,474
2021년	5,059,649	679,688	1,334,813	1,040,980	1,310,243	554,565	86,462	52,898
2022년	6,729,117	1,125,616	1,735,187	1,247,173	1,848,911	553,955	129,255	89,020

<출처 : 2023년 소방청 통계자료>

문 의 처

02)6788-5342